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45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백승아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2024. 12. 10.
3. 회부연월일: 2024.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관할청¹⁾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서,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요건을 갖
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설
치·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
써,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 ----- -----위하여 <u>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u> ----- ----- ----- -----.

1) 관할청은 국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인(「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

② <u>관할청</u> 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u>운영</u>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는----- ----- - <u>설치·운영</u> ----- ----- -----.
--	--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²⁾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29조는 관할청이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교원지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현황

구분	이용 인원(명)		이용 건수(회)	
	2023학년도	2024.3.~8.	2023학년도	2024.3.~8.
상담	14,496	11,151	34,066	22,510
심리치료	2,407	2,440	7,502	3,999
법률상담	3,607	2,561	4,210	2,984
예방교육	53,640	101,467	22,831	33,821
기타	11,778	10,555	7,969	4,406
합계	85,928	128,174	76,578	67,720
월평균	7,160	21,362	6,382	11,286

자료: 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이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센터장(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음.³⁾

다만, 현행법은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정 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3)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특별교부금	1,263	1,246	9,478	7,619	9,030	8,611
보통교부금	8,026	7,518	11,149	9,892	24,053	23,497
합계	9,289	8,764	20,627	17,511	33,083	32,108

주: 교육활동 보호 예산 전체가 아닌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예산임

자료: 교육부

※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및 상주 인력 현황은 【참고자료 1, 2】 참조

이에 개정안은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1]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센터 지정 또는 설치	●관할청이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
비용 지원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

자료: 「교원지위법」 현행 해당 조항 및 개정안 정리

개정안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도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현실의 간극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현행법령이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정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안 제29조제1항: 일부수정

- 현재 시·도교육청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기보다 심리상담, 법률 전문인력 및 상담을 위한 시설을 직접 갖추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29조제2항: 이견없음

-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은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수정안)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개정안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자료>

1.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현황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2개 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 중

설치운영주체	센터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힐링센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파주교권보호지원센터
	고양교권보호지원센터
	구리남양주교권보호지원센터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수원교권보호지원센터
	용인교권보호지원센터
	화성오산교권보호지원센터
	광주하남교권보호지원센터
	안양과천교권보호지원센터
	평택교권보호지원센터
	시흥교권보호지원센터
	안산교권보호지원센터
	부천교권보호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충청남도교육청	충남교권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진주상당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주: 2024.8.31. 기준

자료: 교육부

2.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상주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센터장/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	변호사	상담사	교사	기타	합계
서울	1	3	1	1	3	0	0	9
부산	1	0	3	0	2	0	3	9
대구	1	1	1	1	2	0	2	8
인천	1	2	1	2	3	0	0	9
광주	2	4	6	2	2	0	0	16
대전	1	1	3	0	3	1	0	9
울산	1	2	1	2	1	0	0	7
세종	0	2	1	1	2	0	0	6
경기	14	16	14	6	6	0	0	56
강원	0	1	0	1	1	0	0	3
충북	1	2	2	1	1	1	0	8
충남	1	2	1	1	2	0	0	7
전북	2	2	1	2	2	1	0	10
전남	1	1	1	5	1	0	0	9
경북	2	1	1	1	1	0	0	6
경남	1	3	2	0	3	1	0	10
제주	2	1	0	1	0	1	0	5
합계	32	44	39	27	35	5	5	187

주: 2024.8.31. 기준

자료: 교육부